

瑞山市上水道事業所設置條例中例改正條例(案)

檢 討 報 告

1. 提出者：瑞山市長

2. 提出日字：1998. 8. 21

3. 提案理由

-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자치경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
- 유사기능 업무가 분리되어 있던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통폐합 함에 따라 명칭변경 및 사무를 분장코자 함.

4. 主要骨子

- 안의 제명은 서산시 상수도사업소를 서산시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,
- 안제1조(목적)중 상수도시설을 상하수도시설로 하며, 서산시 상수도사업소를 서산시 상하수도사업소로 조정하고,
- 안제3조중 상수도사업소의 업무는 현행과 같으며, 수도과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 업무를 조정 하려는 것임.

5. 檢討意見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(사업소)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로써,
- 서산시 기구개편 계획추진에 따라서 시본청에 있던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통합하여 서산시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 사무를 분장코자 하는 것으로,
- 본 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